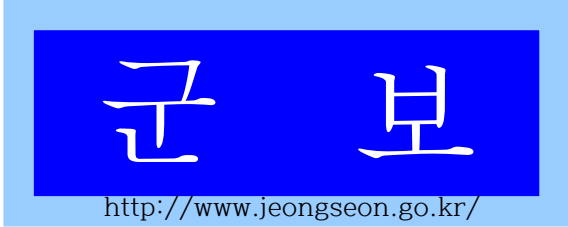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649호 2023. 12. 27. (수)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3004호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정선군 조례 제3005호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3006호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15
- 정선군 조례 제3007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18
- 정선군 조례 제3008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5
- 정선군 조례 제3009호 정선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30
- 정선군 조례 제3010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34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96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44
- 정선군 규칙 제139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47
- 정선군 규칙 제1398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55
- 정선군 규칙 제1399호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6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4호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를 각각 “군의”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인없” 을 “승인 없”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령” ” 을 ““영”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2조제3항” 을 “영 제12조제3항” 으로, “기간동안” 을 “기간 동안”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기등기” 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 로,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를” 을 “별지 제2호서식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 를” 을 “별지 제3호서식을”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 를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 를 “법 제36조의3”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 을 “지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 을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 으로 한다.

- 1. 당연직 위원 : 기획담당관, 총무행정담당관, 복지과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지방보조금 관련 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차례에 한하여” 를 “차례만”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 을 “(위원회의 운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
- 3.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③ 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을 “재적위원” 으로, “참석위원” 을 “출석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를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로,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를 “위원회의 심의 및” 으로 한다.

제16조 중 “간사를” 을 “간사 1명을” 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 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 3. 회의 심의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u>----- ----- -----.</p>
<p>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제2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 <u>한다</u>-----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p>	<p>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 ----- ----- ----- -----.</p>

현 행	개 정 안
<p>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u>다만,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u></p>	<p><u>&lt;단서 삭제&gt;</u></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 -----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국가 또는 <u>지방자치단체</u>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p>	<p>2. ----- <u>군의</u> ----- -----</p>
<p>3. 국가사업 또는 <u>지방자치단체</u>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p>	<p>3. ----- <u>군의</u> ----- ----- -----</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u>각호</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 ----- <u>각호</u> ----- -----</p>

현 행	개 정 안
<p>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p> <p>1. 군수의 <u>승인없이</u>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p> <p>2.·3. (생략)</p> <p>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p> <p>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u>각호</u>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u>시행령</u>”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③ 군수는 <u>시행령</u>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기간동안</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p> <p>1. ~ 4. (생략)</p>	<p>----- ---.</p> <p>1. ---- <u>승인 없이</u>-----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p> <p>① ----- ----- <u>각 호</u>-----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u>영</u>”----- ----- -----.</p> <p>③ ---- <u>영</u> ----- ----- ----- ----- <u>기간 동안</u> ----- -----.</p> <p>1.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 략)</p> <p>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u>부기등기</u>를 할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u>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u>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u>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u>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u>별지 제4호서식</u>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u>법 제25조</u>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 <u>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u>----- --- <u>별지 제2호서식을</u> ----- -----.</p> <p>② ----- ----- ----- <u>별지 제3호서식을</u> ----- ----- -----.</p> <p>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 <u>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u>----- ----- ----- -----.</p> <p>② ---- <u>법 제36조의3</u>----- ----- ----- ----- ----- ----- -----</p>



현 행	개 정 안
<p>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p>----- -----.</p>
<p>③·④ (생 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p>	<p>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 장은 기획관이 된다.</p>	<p>② ----- ----- <u>지</u> <u>방보조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u> <u>장</u>-----.</p>
<p>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 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③ ----- ----- -.</p>
<p>1. <u>총무행정관</u></p>	<p>1. <u>당연직 위원 : 기획담당관, 총</u> <u>무행정담당관, 복지과장 또는</u> <u>군수가 지정한 지방보조금 관</u> <u>련 부서장</u></p>
<p>2. <u>복지과장</u></p>	<p>&lt;삭 제&gt;</p>
<p>3. <u>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u> <u>수가 위촉하는 사람</u> 가. ~ 바. (생 략)</p>	<p>2. <u>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u>--- --- 가. ~ 바.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 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0조(위원의 임기) ① ----- ----- <u>차례만</u> - -----.</p>
<p>②·③ (생 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u>위원회의 운영</u>) ① (생</p>	<p>제12조(<u>위원회의 운영 등</u>) ① (현</p>

현 행	개 정 안
<p>략)</p> <p>② <u>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생략)</p> <p>② <u>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③ (생략)</p> <p>④ <u>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u></p>	<p>행과 같음)</p> <p>② <u>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u>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u></p> <p>2. <u>중복수급,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의 경우 사업별 심의</u></p> <p>3. <u>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u></p> <p>③ <u>군수는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3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재적위원 ----- ----- ----- 출석위원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 위원회의 심의 및 -----</u></p>

현 행	개 정 안
<p>결에 참여할 수 있다.</p> <p>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u>간사</u>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p> <p>제17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u>회의록</u>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p> <p>제16조(간사) ----- ----- <u>간사 1명</u>을 -----</p> <p>-----.</p> <p>제17조(회의록의 비치) ----- -----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u></li> <li>2. <u>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u></li> <li>3. <u>회의 심의 사항</u></li> <li>4. <u>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li> </ol>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1)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12조제2항)
- 2) 지방보조금 관리계획 수립 및 보고(안 제12조제3항)
- 3) 위원 부재 시 대리자 지정에 관한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제4항)

나. 회의록 기재사항 신설(안 제17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5호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을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제외)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중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5급” 을 “4급” 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u>종사한 시험위원 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u> ---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u>--- ---</p>
<p>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2조(지급기준) <u>정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p>
<p>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u>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u></p>	<p>1. <u>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u> 2. <u>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u> 3. <u>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u></p>
<p>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p>	<p>&lt;삭 제&gt;</p>
<p>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p>	<p>제4조(지급제외) 정선군(이하</p>

현 행	개 정 안
<p><u>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u></p> <p>제5조(여비) 군 <u>소속공무원</u>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u>5급</u>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u>“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제5조(여비) -- <u>소속 공무원</u>----- ----- ----- <u>4급</u> ----- -----.</p> <p><u>&lt;삭 제&gt;</u></p>

## □ 제안이유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을 인사혁신처의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전문성 있는 시험위원을 위촉, 객관성 있는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소관 부처 변경(안 제2조)

- (기존) 행정자치부장관
- (변경) 인사혁신처장

나. 시험수당 지급대상 구체화(안 제2조)

-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다. 자치법규 적합성을 위해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 기준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와 동일하게 규정(안 제5조)

- (기존) 5급 공무원 상당
- (변경) 4급 공무원 상당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6호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장” 을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10조제2항 중 “군수” 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 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 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lt;단 서 신설&gt;</p> <p>&lt;신 설&gt;</p>	<p>제4조(포상의 종류) ----- ----- <u>상장, 모 범공무원 포상</u>----- . <u>다만, 모 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u> <u>「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u></p> <p><u>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선발한다.</u></p> <p><u>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 범이 되는 사람</u></p> <p><u>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 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u></p>
<p>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p> <p>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u>군수</u> 가 임명한다.</p> <p>③ ~ ⑦ (생 략)</p>	<p>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성별 균형을 고 려하여 군수</u>-----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 제안이유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군정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선군수 포상 종류 추가(안 제4조)

- 1) 표창장, 감사장, 상장 →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 2) 같은 조 단서 신설 :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나.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 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293회 정선군의회의(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7호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를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로, “정함” 을 “규정함”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7명” 을 “1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를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 를 “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 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중 “공무원이 아닌” 을 “위촉직” 으로, “3년” 을 “2년” 으로, “연임할 수 있다” 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3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을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일” 을 “5일”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 를 “위촉직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u>에 따라 정선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정합</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u>----- ----- ----- <u>규정합</u>----- -----.</p>
<p>제3조(구성) ①정선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7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3조(구성) ①----- ----- ----- - <u>10명</u> ----- ----- ----- -----.</p>
<p>②위원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②----- ----- <u>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u></p>
<p>③위원은 <u>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u></p> <p>1. <u>관계 공무원</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p> <p>1. <u>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u></p>

현 행	개 정 안
<p>2.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3.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④ 삭 제</p> <p>⑤ <u>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 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u></p> <p>제4조(임기) <u>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본조개정 2016.10.20. 제5조에서 이동]</p> <p><u>&lt;신 설&gt;</u></p>	<p><u>건설과장, 도시과장</u></p> <p>2. <u>위촉직 위원</u></p> <p>가. <u>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나. <u>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p> <p>⑤----- ---- <u>지명업무 담당이 되고, 서 기는 지명업무 담당자</u>----- --.</p> <p>제4조(임기) <u>위촉직 ----- ----- 2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u> -----</p> <p>제4조의2(위원의 해촉) <u>군수는 위원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li> <li>2. <u>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u></li> <li>3.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u></p>
<p>제6조(회의) ① (생략)</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소집예정일 <u>7일 전까지</u>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5일 -----</u>. <u>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lt;신설&gt;</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서 회신과 회신된 서면심의회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p>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u></p> <p>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p>	<p>다.</p> <p><u>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9조(수당 등) ----- ----- 위촉직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p> <p>&lt;삭 제&gt;</p>

## □ 제안이유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개정( '23. 6. 11.)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의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 등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 회의 진행과 관련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지명위원회 설치 근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반영(안 제4조)

1)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다. 시·군·구 지명위원회 조례 표준안 반영

1) 위원회 위원수 및 부위원장, 당연직 규정 정비(안 제3조)

2) 위원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3) 위원장 직무 대행 규정 정비(안 제5조)

4) 위원회 소집예정일 서면 통지 규정 정비 및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6조)

5) 관계공무원,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정비(안 제8조)

6) 위촉직과 회의참석자 수당 지급(안 제9조)

7) 도지명위원회 보고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8호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제26조 중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회계관리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5조(회계 및 운영) ①-----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u>20퍼센트</u>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지역실정, 물가, 시설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p> <p>②·③ (생략)</p>	<p>제18조(사용료의 결정) ①----- ----- ----- <u>40퍼센트</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p>	<p>제26조(준용) ----- ----- ----- -----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 【별표 1】

## 읍면종합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

번호	시 설 명	위 치	비 고
1	고한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1	
2	사북읍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사북읍 사북2길 16	
3	신동읍조동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새골길 30	
4	신동읍예미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1	목욕탕 (2003년)
5	화암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0	
6	남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남면 칠현로 80	
7	여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2885	
8	아우라지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24	목욕탕 (2004년)
9	북평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북평면 북평6길 35	
10	임계면종합복지회관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11	임계 목욕탕	정선군 임계면 서동로 4584	2009년
12	북평 목욕탕	정선군 북평면 북평중앙로길 45	2015년
13	화암 목욕탕	정선군 화암면 그림바위길 46-16	2017년
14	남면 목욕탕	정선군 남면 별어곡1길 26	2023년

## 【별표 2】

## 시설 사용료 기준(제18조 관련)

## ○ 복지회관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기준액)	비 고
1. 예식장	1회	50,000	2시간
2. 다목적집회장 기타	1회	35,000	4시간

## ○ 목욕탕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용료 (기준액)	비 고
군 민	1회 이용	대인	4,000	
		소인	2,500	
		취약계층	2,500	
	월 이용	20회	60,000	
관 외	1회 이용	대인	6,000	
		소인	4,000	
		취약계층	4,000	
	월 이용	20회	100,000	

○ 소인: 미취학 아동

○ 대인: 6세이상 ~ 64세이하

○ 취약계층: 경로자, 장애인(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

□ 제안이유

- 가. 공공요금의 인상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적자운영이 심화됨에 따라 2006년 산정되어 2017년 조정된 목욕탕 사용료를 유류비와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수준으로 사용료 기준액을 변경
- 나. 관외 이용자의 증가로 군민 불편이 가중되어 군민과 관외를 구분하여 운영

□ 주요내용

- 가. 목욕탕 사용료 기준액 변경(안 제18조)

[별표 2]

시 설 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1. 목욕탕	1회	3,000	1회	대인	4,000	군민
				소인, 취약계층	2,500	
			1월	20회	60,000	관외
			1회	대인	6,000	
	소인, 취약계층	4,000				
	1월	20회	100,000			
변경 없음						
2. 회의실	1회	50,000				
가. 예식장	1회	35,000				
나. 다목적 집회장						
기타						

※ 2017.5.2.: 3,500원(대인), 2,500원(소인, 취약계층), 50,000원(1월 25매)

- 나. 시설 사용료 기준액 변경 비율 인상(안 제18조)

시설 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20%를 40%로 변경(안 제18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09호

정선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나 벽이 없는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자·출연 기관”이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민은 군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고,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 1.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장(「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 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 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2. 군 또는 출자·출연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 3.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 2. 옥외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 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 5. 비상시 교통계획
-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
- 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 8.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사항
- 9.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
- 10.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④ 군수는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6조에 따라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옥외행사
-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점검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

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면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없이 화기(火氣) 사용, 풍등·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예견되는 때
3. 그 밖에 옥외행사 전이나 행사 중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해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질서유지 등)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주최자에게 옥외행사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요원)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4.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관내 옥외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5조)

- 1)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옥외에서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
-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다. 안전관리계획의 관리대상(안 제7조)

- 1) 군수 및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옥외행사
- 2) 주최자·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라. 안전관리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 요령(안 제8조, 제9조)

- 1) 긴급안전점검 실시, 안전조치 요청(제8조)
- 2) 질서유지, 유관기관 안전관리 지원(제9조)

제293회 정선군의회(2023. 12. 15.) 및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3010호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 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등에 제공하는 교통 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 방향
-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1. 교통·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장
- 2.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교통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
- 2.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3분의 1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8조에서 정하는 지역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이용 대상자
- 2.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
- 3.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③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의 세부내용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특별 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 나.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기간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

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관외 운행에 따른 통행료, 주차료, 대기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 요금 이하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로 한다.

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정선군
2. 강원특별자치도
3. 서울특별시
4. 정선군과 인접한 시·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7.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
8.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제19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① 군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2.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의 인권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 수 번 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또는 O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생활형태	보조인	있음	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297mm

###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교통관리사업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 배차 및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

수 신 : ○○○ 귀하( 읍·면 로 번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 / 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유 형	<input type="checkbox"/> 영구장애 ( 장애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차 량 유 형	<input type="checkbox"/>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input type="checkbox"/>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정선군수 (인)

210mm×297mm

□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도모하고
- 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신설(안 제5조)
- 다.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신설(안 제9조)
- 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안 제18조)
  - 1)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정선군과 인접한 시·군
- 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 신설(안 제20조)
- 바. 부칙
  - 1) 안 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 2) 안 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규 칙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6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1~68	(생략)
	69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생략)		(생략)
환경과	1~22	(생략)
	23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24~80	(생략)
(생략)		(생략)

□ 제안이유

상위법\* 제정에 따른 소관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 소관부처 변경에 따라 우리 군도 관련 내용 정비와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 시행)

※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 주요내용

[별표 1] 업무분장표 기획관 소관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및 환경과 소관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업무를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로 분장사무명 변경

부 서 명	분장사무	비 고
기획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시설국 환경과	<del>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del>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변경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 청	정선군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670	341	16	108	29	84	9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44	337	16	86	29	84	92	
지 도 직			20			20				
연 구 직			5	3		2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소 계	5	3		1	0	1		
		지방서기관	2	2						
		지방서기관·기술서기관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4·5급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 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1					1		
	5급	소 계	32	18	2	2	2	3	5	
		행 정	11	8	2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	3	3						
		행정·농업	2	2						
		행정·환경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시설·공업	1					1		
		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	5						3	2
		행정·농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농업·농촌지도관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사 무관	1				1			
		6급	소 계	162	91	4	19	8	19	21
	행 정		43	25	4		4	5	5	
	세 무		4	4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1	11					
환 경	2	2					
사 회 복 지	0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세 무	7	4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16	7				4	5
행 정 · 방 재 안 전	1	1					
행 정 · 사 서	1	1					
행 정 · 농 업	5	2					3
행 정 · 녹 지	4	4					
행 정 · 전 산	3	2				1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보 건	2			2			
보 건 · 식 품 위 생 · 간 호 · 의 료 기 술	1			1			
행 정 · 환 경	3	2					1
행 정 · 시 설	9	9					
농 업 · 수 의	1	1					
농 업 · 시 설	1	1					
농 업 · 시 설 · 녹 지	4					4	
시 설 · 공 업	2				2		
공 업 · 농 촌 지 도 사	1			1			
농 업 · 농 촌 지 도 사	2	2					
행 정 · 농 업 · 녹 지	0						
행 정 · 세 무 · 농 업	1						1
행 정 · 환 경 · 공 업	1				1		
행 정 · 환 경 · 보 건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 녹 지	5						5
보 건 · 간 호 · 의 기	8			8			
보 건 · 간 호 · 의 기 · 보 건 진 료	3			3			
보 건 진 료	4			4			
운 전 · 기 계 운 영	3	3					
사 무 운 영	2						1 1
사 무 운 영 · 시 설 관 리	1				1		
시 설 관 리	1						1

		토목운영	1	1						
일 반 직	7급	소 계	189	104	5	25	8	20	27	
		행 정	60	35	4		2	7	12	
		세 무	8	7					1	
		사회복지	12	5				3	4	
		전 산	2	2						
		공 업	1	1						
		농 업	3	3						
		수 의	1	1						
		녹 지	2	2						
		보 건	5			5				
		의료기술	3			3				
		간 호	4			4				
		환 경	4	2			2			
		시 설	21	14			1	2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9	1					3	5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행정·방재	1	1						
		전산·방송통신	3	3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6			6				
		보건진료	3			3				
		토목운영	0							
		통신운영	0							
기계운영	1							1		
운 전	7	3	1	2		1				

		사무운영	0						
		운전·기계운영	1				1		
		시설·토목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일 반 직	8급	소 계	159	73	2	28	8	23	25
		행 정	36	20	2		3	6	5
		세 무	3	3					
		사회복지	14	6		1		1	6
		전 산	0						
		공 업	5	3			2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2			2			
		식품위생	1			1			
		간 호	6			4		2	
		환 경	3	2			1		
		시 설	18	11			1	4	2
		전산·방송통신	1	1					
		환경·방재안전	1				1		
		행정·세무	5	1				3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전산	2	2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3	2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0						
		행정·시설	9	5					4
		환경·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9			9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0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1			1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시설관리	0						
		공업·전기운영	1	1					
		공업·기계운영	1					1	
		운 전	11			2		4	5
일 반 직	9급	소 계	96	48	3	10	3	18	14
		행 정	28	13	2		2	5	6
		세 무	3						3
		사회복지	14	4		1		5	4
		공 업	3	2			1		
		농 업	6	4				2	
		녹 지	3	3					
		환 경	2	2					
		보 건	5			5			
		의료기술	1			1			
		시 설	9	7				1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1	1					
		전산·방송통신	1	1					
		시설·전산	1	1					
		시설·방재안전	1	1					
		토목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0						
		기계운영	0						
		열관리 운영	0						
		운 전	9	3	1	2		3	
		속 기	0						
		사무운영	3	1		1		1	
		시설관리	0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1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도직	지도직 소계	20			20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17			17			
연구직	연구직 소계	5	3		2			
	학예연구사	2	2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 □ 제안이유

정선군립도서관 직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보건소 내 정원 복수 조정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정선군립도서관 직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정원 반영(별표)

○ 본청(가족행복과) 내 도서관운영담당 신설

- 반영직급 : 지방행정주사·지방사서주사

나. 직속기관(보건소) 내 복수정원 조정 반영(별표)

○ 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 지방보건주사보·지방간호주사보 6명

→ 지방보건주사보·지방간호주사보·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보건진료주사보 6명

※ 입법예고 의견 조정 반영

다. 정원 상계조정 내역

현 행	본 청 지방행정주사 1명	직속기관 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조 정	본 청 지방행정주사·지방사서주사 1명	직속기관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3명
현 행	직속기관 지방보건주사보·지방간호주사보 6명	
조 정	직속기관 지방보건주사보·지방간호주사보·지방의료기술주사보·지방보건진료주사보 6명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8호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정선군 반의 명칭(자연지명) 및 관할구역

리반 명칭			자연지명		관 할 구 역	
정선읍 (235)	봉양 1리	제 1반	정선오일장	【마을】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상동	【마을】	"	제 13반
	"	제 14반	상동	【마을】	"	제 14반
	"	제 15반	상동	【마을】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상동	【마을】	봉양 2리	제 1반
	"		호선역터	【마을】		
	"		새청거리	【마을】		
	"		소두둑	【마을】		
	"	제 2반	상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정선오일장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	【마을】	"	제 5반
	"	제 6반	상동	【마을】	"	제 6반
	"	제 7반	상동	【마을】	"	제 7반
	"	제 8반	상동	【마을】	"	제 8반
	"	제 9반	상동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상동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상동	【마을】	"	제 11반	
"	제 12반	상동	【마을】	"	제 12반	
"	제 13반	삼우주택	【마을】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중동	【마을】	봉양 3리	제 1반
	"		배터거리	【마을】		
	"		비석거리	【마을】		
	"	제 2반	중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중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중동	【마을】	"	제 5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고한읍 (117)	고한 1리	제 1반	만항 함백산(咸白山)	【마을】 【산】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만항, 평화촌 만항재, 능목재 제당골, 강동재, 산막골, 쥐정골, 숨골, 적남골 뽕족산	【마을】 【고개】 【골짜기】 【산】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두문동(杜門洞), 대두문동	【마을】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대두문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대두문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두문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두문동 두문동재 두문동재터널 금대봉(金臺峯), 천의봉(天倚峯)	【마을】 【고개】 【터널】 【산】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소두문동(小杜門洞) 마당목 큰골, 너실목	【마을】 【고개】 【골짜기】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지레바우, 소두 교틀재	【마을】 【고개】	"	제 2반
	"	제 3반	씨리덕	【골짜기】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박심마을	【마을】	고한 4리	제 1반	
"	제 2반	박심, 삼봉(三棒), 성황당마을 국시당 팍심이재, 박심고개	【마을】 【성황당】 【고개】	"	제 2반	
고한 5리	제 1반	상갈래	【마을】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상갈래	【마을】	"	제 2반	
"	제 3반	절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스카이빌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삼거리	【마을】	"	제 5반	
"	제 6반	절골아래	【마을】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중갈래삼거리	【마을】	"	제 1반	
"	제 2반	더좋은오피스텔	【마을】	"	제 2반	
"	제 3반	중앙파크빌	【마을】	"	제 3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사북읍 (119)	직전리	제 1반	무널 【마을】	직전리	제 1반
	"	제 2반	볼당골,감재골, 사양골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피내,탑뒤,주막거리, 사부랭이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서원기골 【골짜기】 밭전(鉢田),먼지골 【마을】	"	제 4반
	"	제 4반	덧이마 【산】 빨딱고개 【고개】 밭전(鉢田),비릿, 노목산(櫓木山) 【마을】	"	제 4반
	"	제 4반	고부산(高釜山) 【산】 마밭이재,말고개재 【고개】 큰골 【골짜기】	"	제 4반
	사북 1리	제 1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범바위골 【마을】	"	제 2반
	"	제 3반	범바위골 【마을】	"	제 3반
	"	제 4반	범바위골 【마을】	"	제 4반
	"	제 5반	범바위골 【마을】	사북 1리	제 5반
"	제 6반	범바위골 【마을】	"	제 6반	
"	제 7반	범바위골 【마을】	"	(대림아파트 가동) 제 7반	
"	제 8반	범바위골 【마을】	"	(대림아파트 나동) 제 8반	
"	제 9반	범바위 【바위】	"	(하이랜드빌리지 5동) 제 9반	
"	제 10반	범바위골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범바위골 【마을】	"	(영동아파트 3동~4동) 제 11반	
사북 2리	제 1반	사북아파트 【마을】	사북 2리	제 1반	
"	제 2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정선군임대아파트 가동101호~505호) 제 2반	
"	제 3반	사북아파트 【마을】	"	(정선군임대아파트 나동101호~505호) 제 3반	
"	제 4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선명아파트 【마을】	"	제 9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사북 10리	제 1반	윗사북	【마을】	사북10리	제 1반	
	"	마름터	【마을】		"	제 2반
	"	윗사북	【마을】		"	제 3반
	"	윗사북	【마을】		"	제 4반
	"	윗사북	【마을】		"	제 5반
	"	윗사북	【마을】		"	제 6반
	"	윗사북	【마을】		"	제 7반
사북 11리	제 1반	단무지	【마을】	사북11리	제 1반	
	"	남명이골	【골짜기】		"	제 2반
	제 3반	노른가리	【마을】		"	제 3반
사북 12리	제 1반	등등재	【고개】	사북12리	제1반(정선산수빌	
	"	전나무골,정지밭골,			임대아파트	
	"	안골안	【골짜기】		101동201호~1503호)	
	"	복일,평지마을,공전	【마을】		제2반(정선산수빌	
	"	샛골,버무덕굴,			임대아파트	
"	마당목이골,느르뱅이골	【골짜기】	102동201호~1004호)			
	화적봉	【산】		제3반(정선산수빌		
				임대아파트		
				103동101호~1403호)		
				제4반(정선산수빌		
				임대아파트		
				105동201호~902호)		
				제5반(정선산수빌		
				임대아파트		
				106동201호~1502호)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신동읍 (134)	예미 1리	제 1반	의림길,비석거리	【마을】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창가산	【산】			
	"	제 3반	의림길	【마을】			
	"	제 4반	의림길	【마을】			
	"	제 5반	의림길	【마을】			
	"	제 6반	의림길	【마을】			
	예미 2리	제 1반	유문동(柳門洞), 광관	【마을】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신밭골 애목재 유문동	【골짜기】 【고개】 【마을】			
	"	제 3반	작은부밭골,큰부밭골, 큰뗏길 수리봉 유문동,괴그무골	【골짜기】 【산】 【마을】			
	"	제 3반	달구매,큰구지, 용골 구러가재,고성리재 고성터널	【골짜기】 【고개】 【터널】	"	제 2반	
	예미 3리	제 1반	의림길	【마을】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의림길,장터거리	【마을】			
	"	제 3반	공원산	【산】			
	"	제 4반	의림길	【마을】			
	"	제 5반	장소(裝沼)	【소】			
	"	제 6반	의림길	【마을】			
	예미 4리	제 1반	배영거리	【마을】	종전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새물보	【보】			
	"	제 3반	노일(魯日)	【마을】			
"	제 4반	재건촌	【마을】				
"	제 5반	노일	【마을】				
"	제 6반	노일	【마을】				
"	제 7반(신설)	노일	【마을】				
"	제 8반(신설)	노일	【마을】				
					종전	"	(여미솔아파트 101동) 제 1반(여미솔아파트 102동)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조동 2리	제 1반	길운	【마을】	조동 2리	제 1반	
	"	골안	【마을】		"	제 2반
	"	골안	【마을】		"	제 3반
	"	안길운	【마을】		"	제 4반
	"	염묘산(連墓山)	【산】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개미촌	【마을】	조동 3리	제 1반	
	"	간이역	【역】		"	제 2반
	"	구룡동	【마을】		"	제 3반
	"	구룡동	【마을】		"	제 4반
	"	구룡동	【마을】		"	제 5반
	"	구룡동	【마을】		"	제 6반
	"	구룡동	【마을】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시장	【마을】	조동 4리	제 1반	
	"	수리봉	【산】		"	제 2반
	"	시장	【마을】		"	제 3반
	"	시장	【마을】		"	제 4반
	"	시장	【마을】		"	제 5반
	"	시장	【마을】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시장	【마을】	조동 5리	제 1반	
	"	새목이	【고개】		"	제 2반
	"	시장	【마을】		"	제 3반
	"	유신촌(維新村)	【마을】		"	제 4반
조동 6리	제 1반	상여골	【골짜기】	조동 6리	제 1반	
	" 2반	새골,계장사택	【마을】		" 2반	
		새매골,살개골,	【골짜기】			" 3반
		다래골				
	" 3반	개간지	【마을】		" 4반	
	" 4반	새골				【마을】
	" 5반	새골주공아파트				
	" 6반	재피골	【마을】			
	" 7반	재피골			【마을】	
	" 8반	별밭,별말,과장사택				【마을】
" 9반	애매골,부대골	【골짜기】	" 7반			
	밝은밭			【마을】		
	밝은밭골				【골짜기】	
" 10반	신동근로자아파트	【마을】	" 8반			
" 10반	신동근로자아파트		【마을】	" 9반		
					신동근로자아파트 101동	
				제 10반		
			신동근로자아파트 102동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화암면 (49)	화암 1리	제 1반	아래그림바위[下畫岩]	【마을】	화암 1리	제 1반
	"	제 2반	아래그림바위[下畫岩]	【마을】	"	제 2반
	"	제 3반	아래그림바위[下畫岩]	【마을】	"	제 3반
	"	제 4반	아래그림바위[下畫岩]	【마을】	"	제 4반
	"	제 5반	위그림바위[上畫岩], 아래그림바위[下畫岩]	【마을】	화암 1리	제 5반
	"	제 6반	거북바위[龜岩], 화표주 구슬동(九瑟洞), 원테[院基], 작은구슬동, 텃개	【마을】	"	제 6반
	"	제 7반	약수골, 샘골 화암약수(畫岩藥水), 쌍약수	【골짜기】 【약수】	"	제 7반
	"	제 7반	뒷골 큰구슬동	【고개】 【마을】	"	제 7반
	"	제 7반	금지기골, 풀미당골, 송산골, 도장골	【골짜기】	"	제 7반
	"	제 7반	미사리재	【고개】	"	제 7반
	"	제 7반	천파랭이굴	【동굴】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천포(泉浦), 솔무데기, 새골들	【마을】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화암동굴 큰골	【동굴】 【골짜기】	"	제 2반
	"	제 3반	쌍봉 싸내米川	【산】 【마을】	"	제 3반
	"	제 3반	싸내들 윗둔지	【전답】 【마을】	"	제 3반
"	제 3반	느즌목골, 신밭골, 점불 살구재, 군의산	【골짜기】 【산】	"	제 3반	
"	제 3반	용마소(龍馬沼)	【소】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양지좌사 팍심이재	【마을】 【고개】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산제골, 너래골, 큰터골 좌사뜰	【골짜기】 【전답】	"	제 2반	
"	제 2반	음지좌사 좌사들	【마을】 【전답】	"	제 2반	
"	제 2반	문방안	【바위】	"	제 2반	
"	제 2반	동가산	【산】	"	제 2반	
"	제 2반	모개이소	【소】	"	제 2반	
"	제 3반	소리개재[鳶峙] 오산(鰲山)	【고개】 【마을】	"	제 3반	
"	제 3반	봉우산 늬풍들, 굴개들	【산】 【전답】	"	제 3반	
"	제 3반	오무재, 문재[門峽]	【고개】	"	제 3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역
남면 (83)	문곡 1리	제 1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지장천(地藏川) 【하천】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2반
	"	제 3반	팔봉산 【산】 별어곡(別於谷) 【마을】 별어곡역 【역】	" 제 3반
	"	제 4반	자라바우 【바위】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4반
	"	제 5반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5반
	"	제 6반	별어곡(別於谷), 음지촌(陰地村), 갈버등이 【마을】 무은담(霧隱潭) 【소】	" 제 6반
	"	제 7반	절골 【골짜기】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7반
	"	제 8반	자미원입구 【마을】	" 제 8반
	"	제 9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수려안아파트 【마을】	" 제 10반
	"	제 11반	수려안아파트, 별어곡(別於谷) 【마을】	" 제 11반
	문곡 2리	제 1반	고무골, 큰서덕, 점말(店村) 【마을】 어르메기, 함박골, 흠재이지골, 솔구랭이, 큰당골, 산제골, 상사골, 빈지골, 난치나무골 【골짜기】 줄솔배기, 북동산 【산】 문동바우 【바위】 샘물내기 【샘】	문곡 2리 제 1반
	"	제 2반	별밭 【전답】 골말 【마을】 가재골, 목재이골, 둔지골 【골짜기】 목쟁이 【고개】 가개산 【산】	" 제 2반
	"	제 3반	덕새 【전답】 구등, 바깥구등, 안구등, 탑거리통노구골 【마을】 절골, 구수골, 옛터골, 절골, 샘골, 큰통노구골, 재피골, 울둔이골 【골짜기】 마당맥이 【전답】 마차재 【고개】	" 제 3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무릉 5리	제 1반	정지간,묵산(墨山)	【마을】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정지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3반
"	제 4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4반
"	제 5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5반
"	제 6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6반
"	제 7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7반
"	제 8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8반
"	제 9반	묵산아파트	【마을】	"	제 9반
"	제 10반	한강초이스타운	【마을】	"	제 10반
유평 1리	제 1반	젯마을,메기돌,소마평(小馬坪), 방아실	【마을】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큰골,피패골 바당동(巴堂洞),달사역(達沙驛)	【골짜기】 【산】	"	제 2반
"	제 3반	양짓마을,거리말 한치재	【마을】 【산】	"	제 3반
"	제 4반	소마평(小馬坪), 아살미[我山米]	【마을】	"	제 4반
"	제 5반	큰방아골,서낭골, 고병계곡(高屏溪谷) 장재,매봉재,갈거리산 오파천(鰲波川) 석혈(石穴)	【골짜기】 【산】 【하천】 【동굴】	"	제 5반
"	제 4반	새마을[新村],곧은모태이, 중간모태이 말병바우	【마을】 【바위】	"	제 4반
"	제 5반	아살미골,재기살골 새마을[新村],아랫모태이 자차골,큰넘바우골,제당골, 작은넘바우골,아랫골, 가는골,뒤편,절터산성골 들이산성	【골짜기】 【마을】 【골짜기】 【바위】	"	제 5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여량면 (65)	여량 1리	제 1반	여량(餘糧),여량촌(餘糧)	【마을】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여량	【마을】	"	제 3반
	"	제 4반	여량,녹고마니,문아구	【마을】	"	제 4반
			새두둑	【전답】		
			제당골[祭壇谷],절골,산지댕이,무심골,사실			
			골,너르메골	【골짜기】		
			붉은뽕대	【바위】		
			박달고데이	【고개】		
			큰명지목이,살개봉,탈구렁이,			
			광산봉,반륜산(半輪山),			
			잘룩봉	【산】		
			고양천	【하천】		
	"	제 5반	여량	【마을】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상동	【마을】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상동,장거리	【마을】	"	제 2반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아우라지들	【마을】	"	제 5반
			아우라지			
여량 3리	제 1반	하동	【마을】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여량	【마을】	"	제 2반	
"	제 3반	여량	【마을】	"	제 3반	
"	제 4반	덕구미	【전답】			
		마산재마을,벌안	【마을】	"	제 4반	
		마산재,용진	【산】			
		꽃베루	【도로】			
		녹고개	【고개】			
		선두골,배골	【골짜기】			
여량 4리	제 1반	상동	【마을】	여량 4리	제 1반	
"	제 2반	상동	【마을】	여량 4리	제 2반	
		염장봉(鹽臟峰)	【산】			
		다랫벌	【전답】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	제 4반	상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상동,비석거리	【마을】	"	제 5반	
		상동,류뻬나들이	【나루】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 역			
북평면 (68)	장열 1리	제 1반	장열(長悅)	【마을】	장열 1리	제 1반		
			광대비리	【바위】				
			굴등,꽃밭재	【산】				
			얼음굴	【동굴】				
		"	제 2반	얼음내기	【골짜기】	"	제 2반	
		장열(長悅)	【마을】					
				통수골바람부리	【골짜기】			
		"	제 3반	장열나루터	【나루】	"	제 3반	
		장열(長悅)	【마을】					
				솔가재,큰잡이,뽕죽봉	【산】			
				꽃베루	【고개】			
				윗배나루터	【나루】			
		"	제 4반	장열소	【소】	"	제 4반	
		장열(長悅)	【마을】					
	장열 2리	제 1반	하남골	【마을】	장열 2리	제 1반		
			산제굴(山祭窟)	【골짜기】				
갈번지			【전담】					
가평항			【동굴】					
		"	제 2반	이등별	【산】	"	제 2반	
		가드루	【마을】					
				가평나루	【나루】			
				올창소	【소】			
				하남윗골	【골짜기】			
		"	제 3반	옥녀봉(玉女峰)	【산】	"	제 3반	
	범바우	【마을】						
			덕장골	【골짜기】				
북평 1리	제 1반	북평(北坪),하동,	【마을】	북평 1리	제 1반			
		미루니[密雲]						
		거무소,아랫거무소,북평소				【소】		
		용소강				【하천】		
		"	제 2반	하동	【마을】	"	제 2반	
		"	제 3반	하동	【마을】			
		"	제 4반	하동	【마을】	"	제 4반	
		"	제 5반	하동	【마을】			
북평 2리	제 1반	하동	【마을】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붉은언덕			【마을】	"	제 2반
			두리봉,난향산			【산】		
			난향로원			【공원】		
	"	제 3반	상동	【마을】	"	제 3반		

이하 중략

리반 명칭		자연지명		구역	
임계면 (107)	가 목 리 제 1반	가목(柯木), 부수배리 새덕, 버덩들 새목골, 명주목골, 신흥골, 질골, 배나무골, 너래골, 두래골, 굴아우골, 칠만이골 매봉산, 갈미봉, 달팽이산, 상월산 명주목이, 원방재 이기령(耳基嶺), 더바지령 가목천(柯木川)	【마을】 【전답】  【골짜기】  【산】 【고개】 【고개】 【하천】	가 목 리 제 1반  " 제 2반 " 제 3반	
	" 제 2반	군대(軍臺), 눈썰미들 자병산(紫屏山)	【마을】 【산】		
	" 제 3반	마상골 나발고데이 백복령	【마을】 【산】 【고개】		
도전 1리 제 1반	외도전, 빗뿔 뒗버덩 메니미	【마을】 【산】 【골짜기】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외도전	【마을】	" 제 2반		
" 제 3반	뒗골 사자목이, 새목이 선바위골 새목이 용소(龍沼)	【마을】 【고개】 【골짜기】 【고개】 【소】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점구비, 기추목이, 지남바우, 간촌, 사시내 점곡들 아우라지 풀방아골 선바위산	【마을】 【들판】 【하천】 【골짜기】 【산】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내도전(內道田), 상두밭, 장아리 병골, 사시래골, 매바위골, 버드내골, 굽은골, 너래골, 부처바우골, 곶은골	【마을】  【골짜기】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빗뿔, 외도전	【마을】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빗뿔, 영두촌 방우리버덩 상장바우골, 사리미골	【마을】 【전답】 【골짜기】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피원 큰피원, 골말, 꼬치골, 화절촌 뒗봉	【마을】 【골짜기】 【산】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큰피원, 영마루 수무골, 큰뚝다리골, 비선거리골 형제봉, 민동산 밭당두, 당두 생계령, 갈고개	【마을】  【골짜기】 【산】 【전답】 【고개】	" 제 2반		
" 제 3반	구룡동, 늪은피, 노직동(老稷洞), 작은피원 뒗봉골, 큰골, 작은골, 통로골, 부대지골 국사재	【마을】  【골짜기】 【고개】	" 제 3반		

이하 생략

□ 제안이유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특정지역 인구 집중 등에 따라 행정 구역(반) 조정을 통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 추진

□ 주요내용

가. 신동읍 조동6리와 남면 무릉5리의 반 조정

조 정 전				조 정 후				조 정 사 유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신동읍 조동6리	1반	140	180	신동읍 조동6리	9반	62	69	주민 건의
					10반	53	84	
					1반	25	27	
남면 무릉5리	9반	56	92	남면 무릉5리	9반	25	48	
					10반	31	44	

나. 별표 일부 변경(표 서식, 읍면 반의 수 기입 등)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23. 12. 6.)에서 의결된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99호

###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선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정선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정선군 포상 조례」 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할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정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급

성명

위 사람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본 증서를 수여함.

○ 금 액 : 600,000원(월50,000원)

○ 지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 정 선 군 수

□ 제안이유

군정 각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군정시책 추진 및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격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발(안 제3조) :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나. 상여금 지급(안 제4조) :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